

훈 련 운 영 기 준

(Training Specification)



세한대학교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Sehan University Aviation Technical Training Center)

개정기록부(Revision Status)

개정번호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신규	2020.12.21	신규 제정	

목 차(Table)

번호	제 목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A001	발행 및 적용	2020.12.21	-	NEW
A002	정의 및 약어	2020.12.21	-	NEW
A004	특별허가 및 제한사항	-	-	(예비)
A005	면책 및 예외	-	-	(예비)
A006	설치자	2020.12.21	-	NEW
A007	책임관리자 및 훈련운영기준 서명권자	2020.12.21	-	NEW
A008	분교	-	-	(예비)
A009	정원인가	2020.12.21	-	NEW
A010	보증보험 가입	2020.12.21	-	NEW
A012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	2020.12.21	-	NEW
A013	교관 및 평가	2020.12.21	-	NEW
A025	승인된 기록관리 시스템	2020.12.21	-	NEW
B001	전문교육과정	2020.12.21	-	NEW
B002	특별교육과정	-	-	(예비)
B003	기타교육과정	-	-	(예비)
B004	훈련계약 인정 및 제한사항	-	-	(예비)
E001	품질보증시스템	2020.12.21	-	NEW

A001. 발행 및 적용

a. 이 훈련운영기준은 다음의 장소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 교부한다.

주소 : (본교)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실습장)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연락처 :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041-359-6164	041-359-6069	airelec@sehan.ac.kr

- b. 이 훈련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2020-ATO-28)와 함께 교부한다.
- c.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설치자 세한대학교 총장은 항공안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교육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d.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이하 "책임관리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련 및 평가를 담당한다.
- e. 책임관리자는 훈련생 등의 훈련 및 평가를 위하여 지정서에 기재된 훈련기관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f. 이 훈련운영기준은 아래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유효하며 휴장,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계속 유효하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2. 정의 및 약어

이 훈련운영기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정의 및 약어는 항공안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 훈련운영기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훈련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제반 기준의 이행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b. "전문교육기관(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c. "훈련생(Trainee)"이라 함은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 d.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이라 함은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세부사항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조직, 훈련, 시험, 평가에 대한 제한 사항과 훈련과정의 운영 등이 수록된 서류를 말한다.
- e. "훈련시간(Training Time)"이라 함은 훈련생이 지정된 교관으로부터 받은 학과 또는 실기 훈련 시간을 말한다.
- f. "분교(Satellite Training Center)"란 주 전문교육기관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분교는 주 전문교육기관의 기능적 관리 하에 상시적으로(permanent in nature)운영되며 분교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주 전문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다.
- g. "전문교육과정(Approved Training Course)"이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소지자가 훈련, 시험, 또는 평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말한다.
- h. "특별교육과정(Speciality Training Course)"이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소지자가 특정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 i. "기타교육과정(Other Course)"이란 전문교육과정이나 특별교육과정 이외의 기타교육과정을 말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 j. "주임교관(Head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학과 및 실기 교육에 대해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자로 교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 k. "실기교관(Practical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실기,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교관을 말한다.
- l. "학과교관(Department Instruc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 중 학과, 이론교육을 전담하는 교관을 말한다.
- m. "실기시험관(Practical Examiner) 또는 실기평가관(Practical Evaluator)" 이란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4. 특별허가 및 제한사항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5. 면책 및 예외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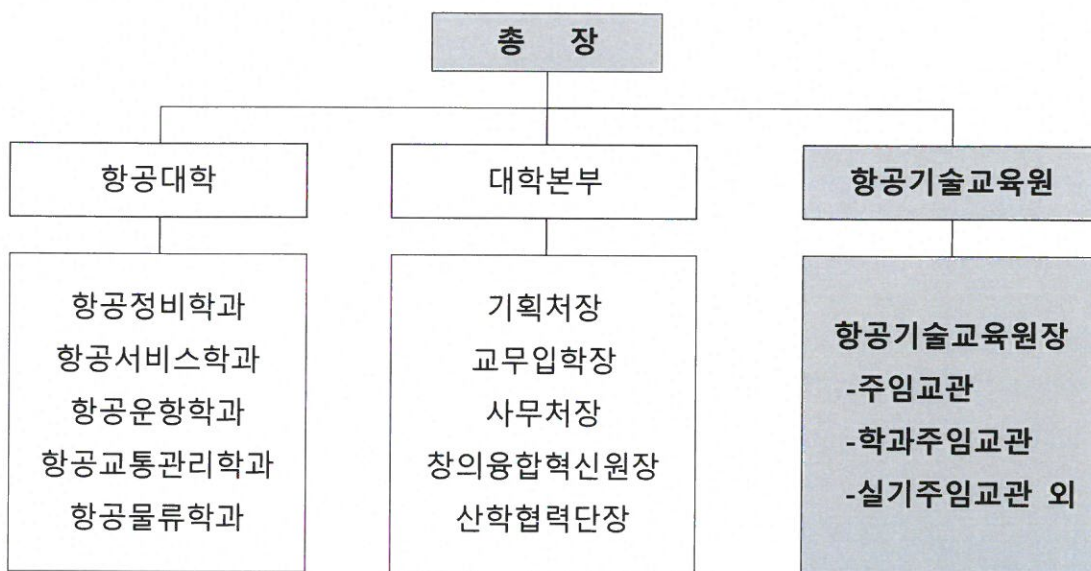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6. 설치자

a.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음 표와 같다.

직 위	성 명	전 화	팩 스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041-359-6000	041-359-6100

b. 전문교육기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세한대학교 조직도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7. 책임관리자 및 훈련운영기준 서명권자

a.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의 책임 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 권 병 국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직위 :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
전화 : 041-359-6136

b. 훈련운영기준을 수령하여 변경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승인부분
항공기술교육원장	권 병 국	전 체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8. 분교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09. 정원인가

a. 전문교육기관 입과 정원

구분	정원(年)
항공정비사과정	연 60명
	연 60명 x 3개 학년 = 연간 총 180명

- 입과시기 : 매해년도 3월, 60명 입과

b. 특별과정 입과 정원

- 해당사항 없음

c. 기타과정 입과 정원

- 해당사항 없음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10. 보증보험 가입

- a. 세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저촉되는 학교기관으로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음
- b. 학부과정 훈련비 보장의 책임은 학교재단에 있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12.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

- a. 책임관리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b. 평가에 대한 판정은 평가판정 기준에 의거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 충족 시 합격으로 판정하고 기준 미달 시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c. 실기시험관은 불합격 판정받은 훈련생에 대해 2차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과정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d. 실기시험관은 심사 종료 후 추가 훈련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기준에 미달된 자를 합격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e. 책임관리자는 평가임무를 수행하는 실기시험관의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의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48조 제9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 (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 f. 책임관리자는 실기시험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 1년 마다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13. 교관 및 평가

- a. 책임관리자는 교관의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관의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b.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48조 제9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 (www.kaa.atims.kr)에 보고하고 운영할 수 있다.
- c. 책임관리자는 소속 교관의 자격 유지와 교육훈련 품질제고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소속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관 또는 실기시험관으로부터 구술 및 기량 평가를 받게 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A025. 승인된 기록관리 시스템

- a. 책임관리자는 이 항에서 정한 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의 교육생 기록을 개인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교육생 성명
 - 2. 교육 과정명
 - 3. 교육성과 담당교관의 성명
 - 4. 시험 또는 평가결과 및 담당 평가관의 서명
 - 5.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추가 이수교육 및 평가 결과
- b. 책임관리자는 제 a 항에서 정한 기록들을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c. 책임관리자는 이 훈련운영기준에 의거 지정된 과정에 임명된 교관 및 평가관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전문교육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 및 퇴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d. 책임관리자는 교육생 요구 시 훈련기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e. 책임관리자는 교육생의 기록을 아래의 장소에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 f. 책임관리자는 교관 및 평가관 자격 및 훈련요건의 이행상태에 관한 기록을 아래 장소에 보관한다.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 g. 모든 기록물은 침수나 화재 방지설비 등 재난대비 설비가 갖추어진 지상 건물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사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B001. 전문교육과정

a. 책임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항공정비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에는 다음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b. 항공정비사과정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국토교통부 기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사과정			
	표준 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시간		세한대학교 교과목명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학과	실기
항공법규	국제항공법	45	-	좌동	-	45	-
	국내항공법			좌동			
	항공법규항공정비관리	45	-	좌동	-	45	-
	중간시험(2회 이상)	5	-	중간시험(2회 이상)		5	-
	과목소계	95				95	
정비일반	수학·물리	30	-	좌동	-	30	-
	항공역학	45	-	좌동	-	45	-
	항공기 도면	20	25	좌동	좌동	20	25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10	20	좌동	좌동	10	20
	항공기재료, 공정, 하드웨어	20	25	좌동	좌동	20	25
	항공기 세척 및 부식방지	15	15	좌동	좌동	15	15
	유체 라인 및 피팅	10	35	좌동	좌동	10	35
	일반공구와 측정공구	10	20	좌동	좌동	10	20
	안전 및 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20	10	좌동	좌동	20	10
	검사원리 및 기법	30	15	좌동	좌동	30	15
	인적성능 및 한계 (위기 및 오류관리포함)	45	-	좌동	-	45	-
	중간시험(2회 이상)	10	-	중간시험(2회 이상)		10	-
	과목소계	265	165			265	165
항공기체	항공기 구조	30	30	좌동	좌동	30	30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구분	국토교통부 기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사과정			
	표준 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시간		세한대학교 교과목명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학과	실기
	항공기 천,외피,목재와 구조물수리	20	10	좌동	좌동	20	10
	항공기 금속구조 수리	30	60	좌동	좌동	30	60
	항공기 용접	20	40	좌동	좌동	20	40
	첨단 복합 소재	25	50	좌동	좌동	25	50
	항공기 도색 및 마무리	10	20	좌동	좌동	10	20
	항공기 유압계통	30	30	좌동	좌동	30	30
	항공기 착륙장치 계통	30	30	좌동	좌동	30	30
	항공기 연료계통	30	30	좌동	좌동	30	30
	화재방지, 제·방빙 및 제우계통	15	15	좌동	좌동	15	15
	객실공조 및 공기압력 제어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헬리콥터 구조 및 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중간시험(2회 이상)	15	-	중간고사(2회이상)		15	-
	과목소계	295	365	과목 소계		395	365
항공 발동기	왕복엔진 일반 및 흡기·배기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왕복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왕복엔진 점화 및 시동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왕복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프로펠러	20	25	좌동	좌동	20	25
	헬리콥터 엔진	20	25	좌동	좌동	20	25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구분	국토교통부 기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사과정			
	표준 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시간		세한대학교 교과목명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학과	실기
	왕복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좌동	좌동	20	25
	왕복엔진정비 및 작동 (화재방지계통포함)	20	25	좌동	좌동	20	25
	경량항공기 엔진	10	5	좌동	좌동	10	5
	가스터빈엔진 일반 및 구조	20	25	좌동	좌동	20	25
	가스터빈엔진 연료 및 연료조절 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가스터빈엔진 점화 및 시동작동	20	25	좌동	좌동	20	25
	가스터빈엔진 윤활 및 냉각계통	20	25	좌동	좌동	20	25
	가스터빈엔진 장탈 및 교환	20	25	좌동	좌동	20	25
	가스터빈엔진정비 및 작동(화재방지계 통포함)	10	20	좌동	좌동	10	20
	중간시험(2회 이상)	5	5	중간고사(2회이상)		5	5
	과목소계	285	355			285	355
전기/ 전자/ 계기	기초전기·전자	120	75	좌동	좌동	120	75
	항공기 전기계통	60	30	좌동	좌동	60	30
	항공기 계기계통	60	30	좌동	좌동	60	30
	항공기통신 및 항법계통, 자동비행장 치	120	60	좌동	좌동	120	60
	중간시험(2회 이상)	5	10	중간시험(2회 이상)		5	10
	과목소계	365	205	과목소계		365	205
최종시험	종합평가 시험	5	10	종합평가지험		5	10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구분	국토교통부 기준		세한대학교 항공정비사과정				
	표준 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기준시간		세한대학교 교과목명		총계	
		학과	실기	학과 교과목	실기 교과목	학과	실기
법정기준 소계		1,310	1,100	과정편성 소계		1,310	1,100
법정기준 총계		2,410		과정편성 총계		2,410	

c. 실기 교육 방법

- 1) 실기 교육은 교내 실습장에서 실기 교과목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체험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로부터 AOC 또는 AMO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실시해야 한다.
- 3) 실기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은 해당업체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보고 후 지정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현장에 실기교관을 임명하거나 실기교관 입회하여 실기교육을 해야 한다.
- 4) 실기교육 내용은 정비실습일지에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실기교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B002. 특별교육과정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B003. 기타교육과정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B004. 훈련계약 인정 및 제한사항

해당 사항 없음
(RESERVED)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

E001. 품질보증시스템

책임관리자는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수기법에 대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a. 책임관리자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b. 품질보증시스템은 항공관련법 및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c. 품질보증시스템에는 교관 및 평가관이 이 훈련운영기준으로 지정된 훈련, 시험, 평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d. 표준절차의 준수, 교육의 품질, 브리핑/디브리핑 기술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교관품질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e. 책임관리자는 과정 완료 후에, 훈련생의 이해 및 역량 향상, 훈련과목의 적정성, 평가의 적합성, 교관의 교수능력, 성적의 분포 등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을 측정 및 평가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며 다음 훈련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유 경 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발급)

적용일 : 2020. 12. 21

Effective Date : Dec. 21. 2020